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895호)
- 김민전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74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7
1. 총괄적 검토	7
(1) 제정안의 내용 및 구성	7
(2) 입법 배경	12
가. 교육발전특구 개요	12
나.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 현황	14
(3) 유사 입법례	15
(4)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	17
2. 주요 내용별 검토	19
(1) 총칙(안 제1조부터 제4조)	19
(2)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안 제5조부터 제14조)	24
가. 특구 지정신청·지정·변경·해제·성과관리	24
나. 특구위원회·사무국·전담기관·지역협의체 등 설치·운영	31
(3)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지정 및 운영(안 제15조부터 제22조)	35
가. 선도지역 지정신청·지정·변경·해제·성과관리	35
나. 교육혁신위원회·전담조직·선도지역별 전담조직 등 설치·운영	42

(4) 규제특례(안 제23조부터 제37조)	46
가. 유치원·돌봄 관련 특례	46
나. 초·중등학교 설립·운영 및 교육과정 관련 특례	53
다. 교원 임용 및 자격 관련 특례	57
라. 외국인유학생 유치 특례	65
마. 지역 특성 산업인재 양성 특례	67
바. 국유재산·공유재산 등 사용·수익허가 특례	69
(5) 규제 제외 우선 허용(안 제38조부터 제41조)	71
(6) 보칙(안 제42조 및 제43조)	78
 【참고자료 1】 제정법안 특례 주요내용	80
【참고자료 2】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현황	81

I. 제안경위

【김도읍의원안】

1. 발 의 자 : 김도읍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26.
3. 회부연월일 : 2024. 11. 27.

【김민전의원안】

1. 발 의 자 : 김민전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24.
3. 회부연월일 : 2024. 1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도읍의원안】

제안이유

2024년 3월부터 교육부는 지역의 공교육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별 교육발전특구를 시범적으로 지정 및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운영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의 공교육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 정주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학교설립부터 교원인사, 학교 시설 및 폐교 활용, 교육과정 등 지역특성 맞춤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공교육의 혁신을 이끌어 내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등 지역 내 기관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 확보와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6조).
- 라. 특구 운영의 성과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특구 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
- 마. 교육발전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과 학교는 설립기준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8조).

바. 교육발전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은 다문화

학생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법무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 내 학교의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아.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에서 교육분야 규제 적용

등을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적용받고자 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의 우선 허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대학 총장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지정·운영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김민전의원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특히, 지방의 공교육이 약화되고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며 정주를 유도할 체계가 부족한 점이 주요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 공교육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교육발전특구·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등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협력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올해 교육부는 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83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교육발전특구·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지정과 운영, 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지역 공교육 활성화와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다.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특구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특구의 지정 및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발전특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함(안 제10조).

마. 선도지역을 지정받으려는 수도권외의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공동으로 선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교육혁신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공동으로 선도지역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안 제17조).

사. 선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혁신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함(안 제20조).

아. 특구와 선도지역의 규제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권한을 이양하는 규제특례를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37조까지).

자. 특구와 선도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기준·요건·절차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혹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도 및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해당 규제의 적용 제외를 허용하는 교육 분야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의 신청·취소 등을 규정함(안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1) 제정안의 내용 및 구성

제정안들(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은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문순서, 특례규정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일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총칙에서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둘째,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역(지정 지역)에서 기초 또는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신청하도록 하고, 필요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셋째,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수도권 지역(지정 지역)에서 교육감, 기초 지자체장, 대학의 장이 공동신청하도록 하고, 필요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넷째, 특별법안에 규정되어 적용되는 특례로서 유아돌봄·학교운영·교원·유학생·지역인재 등의 분야에 대해서 특구 및 선도지역 관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선도지역의 경우 대학의 장 포함)으로 신청 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또는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특구별로 상황에 따라 필요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다섯째, 규제 제외 우선 허용 특례와 관련하여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교육분야 규제에 대해 필요 시 규제제외를 우선 허용할 수 있도록 함.

<제정안 주요내용>

① 총칙

- (목적)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을 구축
- (재정 지원) 국가와 지자체에게 사업의 지속성 보장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지원 의무

②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

- (지정 단위)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 가능
- (지정 지역) 수도권이 아닌 지역
 - ※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은 선정 가능
- (특례 적용) 교육발전특구 사업운영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특례 및 특례 허용 신청 가능 → 위원회 검토 후 특례 적용 결정

③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지정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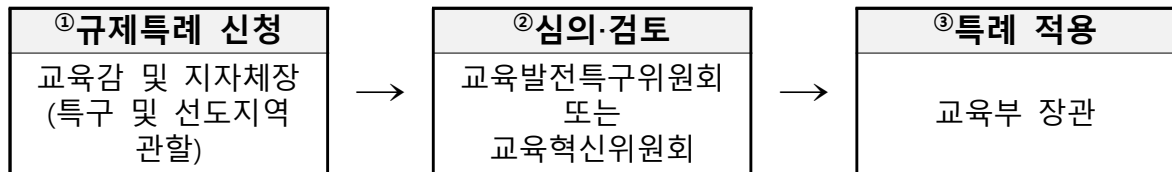
- (개요) 대학이 지역 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면서 초·중·고 분야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종합적으로 지원
- (지정 지역) 수도권 지역(교육발전특구 기지정 지역 제외)
- (신청 주체) 교육감 - 기초 지자체장 - 대학총장(전문대 포함) 공동신청
 - ※ 교육발전특구와 다르게 대학총장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전제
- (특례 적용) 교육발전특구와 동일하게 특례 적용 및 특례 허용 가능

□ 특례 및 적용 방식

① 특별법안에 규정된 특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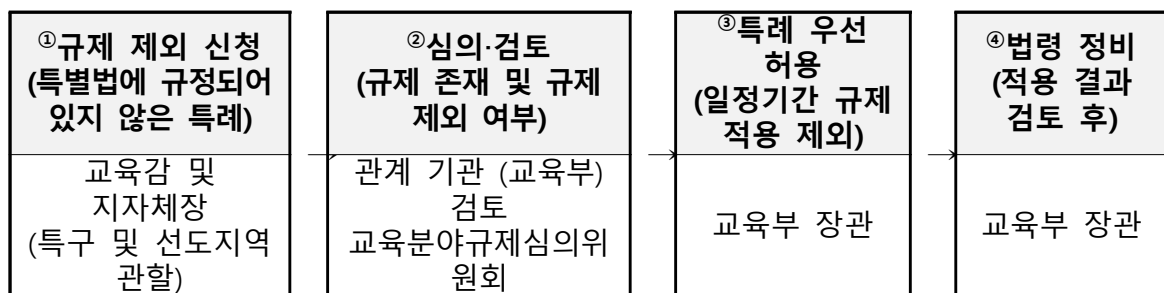
- (신청 주체) 특구 또는 선도지역 운영하는 지자체장과 교육감 공동(선도지역의 경우 대학의 장 포함)

- (대상 특례) 학교 설립 규제 및 운영 방식 자율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인사 자율성 확대, 지역교원제 도입,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 (특례적용 절차) 특구 또는 선도지역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선도지역의 경우 대학의 장 포함)이 그 운영에 필요한 특례를 신청하면 교육발전특구위원회(또는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특구 또는 선도지역별로 상황에 따라 필요한 특례를 적용



② 규제 제외 우선 허용 특례

- (신청 주체) 특구 또는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지자체장과 교육감 공동(선도 지역의 경우 대학의 장 포함)
- (대상 특례) 특별법안에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교육분야 규제에 대해 원활한 특구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규제 제외를 우선 허용
 - ※ 법령에 따른 절차나 요건이 불명확하거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는 제도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검토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규제 적용 제외를 신청하면 해당 규제의 존재와 규제 제외 우선 허용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검토와 교육분야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규제 적용 제외 우선 허용



- (허용 기간) 2년 범위 내 기간 지정(2차례 유효기간 연장 가능)
- (법령 정비) 허용된 규제 특례에 대한 적용 결과를 검토하여 교육분야규제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제 근거 법령 개정 추진

자료 : 교육부

제정안들은 본칙 43개 조문(총칙,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교육 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지정 및 운영, 규제 특례, 보칙)과 부칙으로 구성됨.

<제정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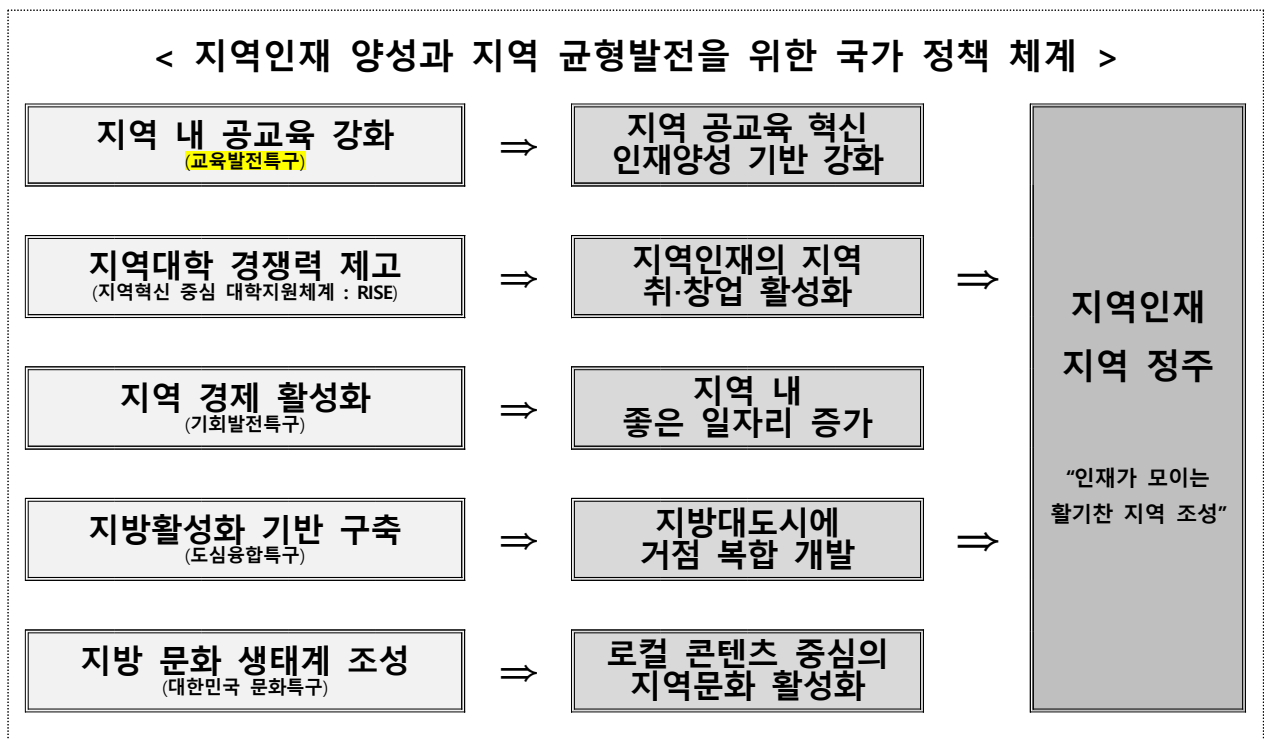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본칙(43개 조문)	☐ 본칙(43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제2장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제5조(특구의 지정신청)	제5조(특구의 지정신청)
제6조(특구의 지정 등)	제6조(특구의 지정 등)
제7조(특구 지정의 효과 등)	제7조(특구 지정의 효과 등)
제8조(특구의 변경)	제8조(특구의 변경)
제9조(특구의 유효기간 및 지정 해제)	제9조(특구의 해제)
제10조(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사무국의 설치 등)	제11조(사무국의 설치 등)
제12조(전담기관)	제12조(특구 전담기관 등)
제13조(특구 운영 전담조직)	제13조(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 등)
제14조(특구 운영의 성과관리)	제14조(특구별 전담조직)
	제15조(특구운영의 성과관리)
제3장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지정 및 운영	제3장 규제 특례
제15조(선도지역의 지정신청)	제1조(교육발전특구와 지역혁신지원 선도지역에 대한 특례)
제16조(선도지역의 지정 등)	제16조(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제17조(선도지역 지정의 효과 등)	제17조(학교 안전공제 적용에 관한 특례)
제18조(선도지역의 변경)	제18조(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제19조(선도지역의 유효기간 및 지정 해제)	제19조(교육과정의 특례)
제20조(교육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0조(농어촌 학교 및 소규모 학교에 관한 특례)

제21조(선도지역 운영 전담조직)	제21조(지역교원에 관한 특례)
제22조(선도지구 운영의 성과관리)	제22조(교원자격에 관한 특례)
제4장 규제특례	
제1절 특구와 선도지역에 대한 규제특례	
제23조(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제23조(협업교육에 관한 특례)
제24조(유치원·어린이집 비용지원에 관한 특례)	제24조(산학겸임교사에 관한 특례)
제25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관한 특례)	제25조(직업계고 교원 파견에 관한 특례)
제26조(거점형 늘봄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제26조(전문교원 확보에 관한 특례)
제27조(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제27조(특구내 학교에 대한 교원 추가배정에 관한 특례)
제28조(교육과정의 특례)	제28조(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한 특례)
제29조(농어촌 학교 및 소규모 학교에 관한 특례)	제29조(지역 산업 관련 교육을 위한 특례)
제30조(지역 교원에 관한 특례)	제30조(공유재산 양여에 관한 특례)
	제2절 교육 분야 규제특례 우선 허용
제31조(교원자격에 관한 특례)	제31조(교육분야 규제제외 우선 허용)
제32조(협업교육에 관한 특례)	제32조(규제제외 우선 허용에 대한 지원)
제33조(산학겸임교사에 관한 특례)	제33조(규제제외 우선 허용 취소)
	제4장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제34조(특성화고등학교 교원 파견에 관한 특례)	제34조(선도지역의 지정신청)
제35조(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한 특례)	제35조(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지정 등)
제36조(지역 산업 관련 교육을 위한 특례)	제36조(선도지역 지정의 효과 등)
제37조(국유·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한 특례)	제37조(선도지역의 변경)
제2절 교육 분야 규제 제외 우선 허용	
제38조(교육 분야 규제 제외 우선 허용)	제38조(선도지역의 해제)
제39조(규제 제외 우선 허용에 대한 지원)	제39조(교육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0조(규제 제외 우선 허용의 취소)	제40조(전담조직의 설치)
제41조(교육분야규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1조(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 등)
제5장 보칙	
제42조(실태조사)	제42조(선도지역별 전담조직)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3조(선도지역 운영의 성과관리)
☐ 부칙(시행일)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입법 배경

가. 교육발전특구 개요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지역교육 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4대 특구(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대한민국 문화특구)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음.



자료 : 교육부

개괄하면 교육발전특구는 ①수도권이 아닌 지역(지정지역)에서 ②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신청(지정단위)하며, ③특구 운영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특례를 제안(적용 특례)할 수 있도록 함.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인재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아·돌봄, 초·중·고, 대학 등 교육 전 단계에 걸쳐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임.

< 교육발전특구 선순환 체계(안) >

	유아·돌봄	초·중·고	대학
목표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역 주도 교육개혁 지원 · 지역의 좋은 학교 육성	· 지역인재 유출 방지
	↓	↓	↓
추진 방향	· 지방정부 돌봄 역할 강화 · 유보통합 시범운영	· 공교육 경쟁력 제고 · 디지털기반 수업 혁신	· 고교-대학-지역 연계 강화 · 지역 인재 선발·양성
	↓	↓	↓
성과 지표	· 출산율 상승	· 학업성취도 상승 · 사교육비 감소	· 지역인재 전형 비율 확대 · 지역인재 취업률 상승

자료 : 교육부

또한, 교육발전특구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타 특구와 연계를 강화하며, 교육개혁과제(늘봄학교, 유보통합, 디지털전환 등)를 우선지원하면서, 지역별로 특례 적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¹⁾.

1)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 2023.12.6.

나.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현황

교육부는 현재 시범사업²⁾으로 교육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개 유형별로 구분(유형별로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로 구분)하여³⁾, 2024년 1차(31건) 및 2차(25건)로 나누어 총 56건을 지정하였음.

< 교육발전특구 유형별 신청단위 및 주체 >

유형	신청 단위	신청 주체
1유형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장-교육감
2유형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장-교육감
3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자료 : 교육부

유형별로는 1유형(기초지자체)이 41건, 2유형(광역지자체) 7건, 3유형(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8건을 각각 지정하였음.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결과(1차 및 2차) >

유형	신청 단위	1차('24. 2월)	2차('24. 7월)	계
1유형	기초지자체	20건 (21개 기초지자체)	21건 (21개 기초지자체)	41건 (42개 기초지자체)
2유형	광역지자체	6건 (6개 광역지자체)	1건 (1개 광역지자체)	7건 (7개 광역지자체)
3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5건 (5개 광역, 22개 기초지자체)	3건 (3개 광역, 19개 기초지자체)	8건 (8개 광역, 41개 기초지자체)
계		31건	25건	56건

자료 : 교육부

2) 교육부는 이러한 사업추진에 대해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시 부대의견(“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한다.”)을 근거로 들고 있음.

3) 수도권이 아닌 지역 원칙

지정된 특구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역현안 특별교부금⁴⁾⁵⁾⁶⁾에서 특구당 30~100억원 상당을 재정지원하고 있고, 2024년도 10월말 기준 1,892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4년 교육발전특구 관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교부일	교부 지역	교부액
2024-07-12	1차(11개 지역)	123,881
2024-08-28	1차(10개 지역)	53,503
2024-10-21	2차(8개 지역)	25,490
2024-10-28	감교부(5개 지역)	△13,670
소계		189,204

자료 : 교육부

(3) 유사 입법례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도심융합특구, 평화경제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이 각각 근거법률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부도 교육국제화특구⁷⁾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4)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는 금액으로, 교부대상은 학교교육시설 신·증축 및 개선,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 시설 관련 사업, 시·도교육감이 지역별·학교별 특색을 반영하여 제안한 지역특색 교육프로그램 사업 등임.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6) 2025년도 지방재정교부금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예산 총액 : 7,437억원

7) “교육국제화특구”란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임(근거법률 제2조)

<특구 운영 현황>

구분	소관부처	근거법률
기회발전특구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평화경제특구	통일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도심융합특구	국토교통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국제화특구	교육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분야 특례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등을, 도심융합특구에서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등을, 교육국제화특구에서 초·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를, 혁신도시에서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교육분야 특례 현황>

법명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8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제29조(「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제30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제3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49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32조(전학·입학 편의 제공)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초·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26조(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제27조(외국인 교원 임용) 제28조(전·입학 편의 제공)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	--

자료 :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 41~53면을 토대로 재구성

(4)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의 인구 감소로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지역 소멸 우려가 심각한 실정임. 특히 지역의 교육 및 거주 여건 부족으로 우수 인재 양성 및 유치가 어려워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제정안들은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구와 선도지역에 지정된 경우 학교설립부터 교원임용 및 배치, 교육과정 등의 특례 적용을 제도화 하려는 것으로,

지역의 교육 및 거주환경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특례 적용을 통해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지원 하는 체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교육부는 2024년 2월부터 현재까지 1, 2차에 거쳐 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83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⁸⁾

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바 해당 사업의 체계적·안정적 지원 및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8)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현황 참고(p.81)

2. 주요 내용별 검토

(1) 총칙(안 제1조부터 제4조)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정주기반을 강화하며, 지역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발전특구”란 지역 교육 발전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규제특례”란 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4장 제1절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3.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이란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요건·절차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도 및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임시로 해당 규제의 적용 제외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발전특구”란 지역 교육 발전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규제특례”란 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3장 제1절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3.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이란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절차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혹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도 및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우선하여 해당 규제의 적용 제외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4. “협약기관”이란 교육발전특구 협약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교육발전특구 운영 계획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이란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하여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6.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대학 등 지역 내 기관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사업의 지속성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	4. “교육발전특구 협약”이란 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특구 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특구 운영방향 등을 명시하여 지역 내 대학, 기관 등과 함께 작성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협약을 말한다. 5. “협약 기관”이란 교육발전특구 협약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교육발전특구 운영 계획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6. “교육발전특구 운영 계획”이란 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협약 기관이 공동으로 지역 교육발전과 인재양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업, 규제 특례를 포함하여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7.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이란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하여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8.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와 선도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등 지역 내 기관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사업의 지속성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역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교육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이하 “선도지역”이라 한다)에 규제특례 및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을 적용할 때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규제특례 및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을 적용받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제의 근거법률을 적용한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추가 재원을 확보·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교육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이하 “선도지역”라 한다)에 특례 등을 적용할 때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라 특례 및 규제 적용 제외 등을 적용받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제의 근거법률을 적용한다.

제정안들은(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총칙으로서 제정안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

가. 제1조(목적)

김민전의원안은 제정안의 목적을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정주기반을 강화하며, 지역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김도읍의원안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두 제정안 모두 앞에서 살펴본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의 필요성이나 교육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및 추진계획 등에 비추어 볼 때 목적조항으로 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제2조(정의)

김민전의원안은 교육발전특구, 규제특례, 규제 제외 우선 허용, 협약기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및 수도권⁹⁾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김도읍의원안은 교육발전특구 협약 및 교육발전특구 운영계획의 정의를 추가 규정하고 있음.

정의규정은 해당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으로, 사용빈도가 높거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등의 경우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가 법률 전반에 걸쳐 여러번 사용되지 않거나 법률해석에 혼동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바⁹⁾, 김도읍의원안의 교육발전특구 협약 및 교육발전특구 운영계획의 경우 정의규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정안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대학 등 지역 내 기관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는 한편, 사업의 지속성 보장과 지역균형발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 등의 책무 규정은 일반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언적·유도적

9) 법제기준과 실제(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 p247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¹⁰⁾하여 실체적·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문을 마련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¹¹⁾. 이와 관련하여 김도읍의원안에서는 재원확보지원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추가 재원 확보·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체적·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이는 바 동 규정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추가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총칙 중에서 목적규정 및 정의규정 다음에 두는바¹²⁾, 조문의 순서는 김민전의원안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라.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정안들은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에 규제특례 및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을 적용할 때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규제특례 및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을 적용받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제의 근거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들이 지역 공교육 혁신 및 정주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각종 규제 특례 등을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10)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발전과 특구 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1) 법제기준과 실제(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 p.257

12) 법제기준과 실제(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 p.255

(2)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안 제5조부터 제14조)

가. 특구 지정신청·지정·변경·해제·성과관리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제5조(특구의 지정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2. 수도권을 제외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교육감은 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협약(이하 “특구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특구 운영기획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구의 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규제특례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구 내 대학 및 기업 등 현황 3. 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4. 그 밖에 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특구의 지정신청) ① 특구를 지정 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비수도권 시·도지사”라 한다)와 교육감 2. 수도권을 제외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하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과 교육감 3.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의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과 교육감 ② 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협약(이하 “교육발전특구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 특구 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특례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구 내 대학 및 기업 등 3. 특구에 적용되는 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4. 그 밖에 특구의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⑥ 제1항에 따른 특구 지정신청의 구체적인 내용·절차와 제3항에 따른 특구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특구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특구의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절차와 구체적 지정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특구 지정의 효과 등) ①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특구 운영계획(이하 “특구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③ 그 밖에 특구 지정신청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특구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특구 지정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와 구체적 지정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특구 지정의 효과 등) ① 제6조에 따라 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공동으로 교육발전특구 사업 운영계획(이하 “특구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하여 교육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제10조에 따른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구 계획의 작성 방법 및 규제특례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특구의 변경) ①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지정이나 제7조제1항에 따른 특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구 지정 및 특구 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특구 지정 및 특구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특구의 유효기간 및 지정 해제) ① 특구의 유효기간은 특구의 지정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특구의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 ②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특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례의 내용이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장과 협의하여 특례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특구의 변경) ① 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제6조 제1항에 따른 지정이나 제7조제1항에 따른 특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구 계획 및 특구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특구 계획 및 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특구의 해제) ① 특구의 유효기간은 특구 지정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특구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 ② 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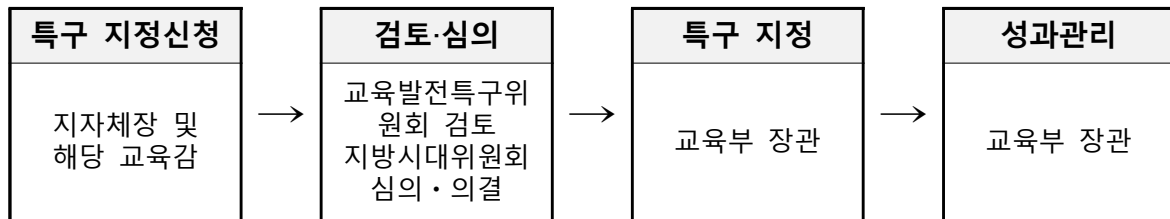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지정해제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특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특구를 운영할 때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구 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교육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해제 신청에 따라 특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해제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특구 운영의 성과관리) ①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특구 운영 실적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 운영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지정해제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특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해당 특구에 대한 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특구를 운영할 때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구 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교육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특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해제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특구운영의 성과관리) ① 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특구 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방법 및 시기,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방법과 그 밖에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들은(김민전의원안 제5조부터 제9조 및 제14조, 김도읍의원안 제5조부터 제9조 및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수도권 제외지역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 해당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특구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지정해제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특구 운영 실적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 운영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교육발전특구 지정 절차>



제정안들은 특구의 지정신청·지정·변경·해제·성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등을 규정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우선, 특구 지정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사전에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은 해당 지역 교육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직접 이용자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¹³⁾. 김민전의원안(제6조제2항)의 경우 특구 지정 이후

13)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① 시·도지사등은 종합발전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심융합특구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등은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화특구계획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화특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③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제2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여 특구지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후적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음으로, 제정안들은 특구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해제 사유 발생 시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신청’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지정 해제 사유 중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특구를 운영할 때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구 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의 지정 해제 신청 사유에 포함하고 있는데 특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 실효성 측면에서 교육부 장관의 직권 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¹⁴⁾.

그 외 제정안들은 특구 운영 성과평가를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데 성과평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특구 관련 타 입법례와 같이 성과평가에 관한 의무규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⁵⁾.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변경지정된 도심융합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등의 의견 청취 및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

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특구의 지정해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5)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나. 특구위원회·사무국·전담기관·지역협의체 등 설치·운영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제10조(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구의 지정 및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3. 특구 협약 및 특구 계획에 관한 사항 4. 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5. 특구에서 신청한 규제특례의 부여·변경·취소·재심의에 관한 사항 6. 특구의 운영 실적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구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특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10조(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발전특구위원회를 둔다. 1.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구의 지정 및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3. 특구 협약 및 특구 계획에 관한 사항 4. 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 특례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7조제1항에 따라 특구에서 신청한 특례의 부여·변경·취소·재심의에 관한 사항 6. 특구 지정 평가 및 성과관리,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구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3조(특화특구 운영의 보고)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특화특구운영의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고려하여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특구운영의 매년도 성과를 평가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시기가 종료된 후 18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④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및 그 밖에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특구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담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특구와 선도지역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지정대상과 지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특구의 지정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교육감은 특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역협의체(이하	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가운데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그 밖에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교육부장관은 특구 관련 사무를 전담하기 위한 특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구 사무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특구 전담기관 등) ① 교육부장관은 특구 실행, 지역별 사업 운영 상황의 점검 및 조정, 전국단위 사업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성과관리 등의 사무를 총괄 운영하기 위하여 특구 전담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구 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 등) ① 특구를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특구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특구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특구지역협의체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구 협약안의 작성 2. 특구 협약기관 간 연계·협업 및 발전방향 마련 3. 제7조제1항에 따른 특구 운영계획의 수립 및 이행 사항 점검 4. 그 밖에 특구의 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무 ⑤ 교육부장관은 특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특구지역협의체에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특구 지정신청의 구체적인 내용·절차와 제3항에 따른 특구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특구 운영 전담조직) ①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특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구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체를 두어야 한다. ② 지역협의체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구 협약안 작성 2. 특구 협약 기관 간 연계·협업 및 발전방향 마련 3. 특구 계획 수립 및 이행 사항 점검 4. 그 밖에 특구의 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무 ③ 지역협의체의 소재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재지로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특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지역협의체에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특구별 전담조직) ① 특구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구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정안들은(김민전의원안 제10조부터 제13조, 김도읍의원안 제10조부터 제14조)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발전특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특구 사무를 효율적

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 특구 전담기관, 지역협의체, 특구별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들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특구 검토·심의기구로서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특구의 지정 및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특구의 운영 실적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구 관련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검토·심의를 거쳐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실현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제정안들의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그밖에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상당히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제정안들은 특구위원회의 사무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특구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특구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취지로 특구 관련 업무의 사무처리기구 등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사무국 및 전담기관은 중앙행정 기관의 하부조직으로 판단되는바, 「정부조직법」 제2조는 중앙행정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에 대통령령(부처별 직제)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지정 및 운영(안 제15조부터 제22조)

가. 선도지역 지정신청·지정·변경·해제·성과관리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제15조(선도지역의 지정신청) ① 수도권의 시장·군수·구청장, 해당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공동으로 선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구로 이미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도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선도지역 지정·운동을 위한 협약(이하 “선도지역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도지역 운영 기획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도지역의 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규제특례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선도지역 내 대학 및 기업 등 현황 3. 선도지역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4. 그 밖에 선도지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⑥ 제1항에 따른 선도지역 지정신청의 구체적인 내용·절차와 제3항에 따른 선도지역 지역협약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선도지역의 지정신청) ③ 선도지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공동으로 선도지역 사무를 효율적	제34조(선도지역의 지정신청) ① 선도지역을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대학 총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공동으로 선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구로 기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② 선도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대학 총장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지정·운동을 위한 협약(이하 “선도지역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도지역 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특례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선도지역 내 대학 및 기업 등 3. 선도지역에 적용되는 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4. 그 밖에 선도지역의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③ 그 외, 선도지역 지정신청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지역협약체 설치 및 운영 등) ① 선도지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선도지역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이하 “선도지역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④ 선도지역 지역협의체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도지역 협약안의 작성 2. 선도지역 협약기관 간 연계·협업 및 발전방향 마련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도지역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이행 사항 점검 4. 그 밖에 선도지역의 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무 ⑤ 교육부장관은 선도지역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선도지역 지역협의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선도지역 지정신청의 구체적인 내용·절차와 제3항에 따른 선도지역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선도지역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교육혁신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선도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선도지역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체를 둔다. ② 지역협의체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도지역 협약안 작성 2. 선도지역 협약 기관 간 연계·협업 및 발전방향 마련 3. 선도지역 계획 수립 및 이행 사항 점검 4. 그 밖에 선도지역의 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무 ③ 지역협의체의 소재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재지로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선도지역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지역협의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39조에 따른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선도지역 지정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와 구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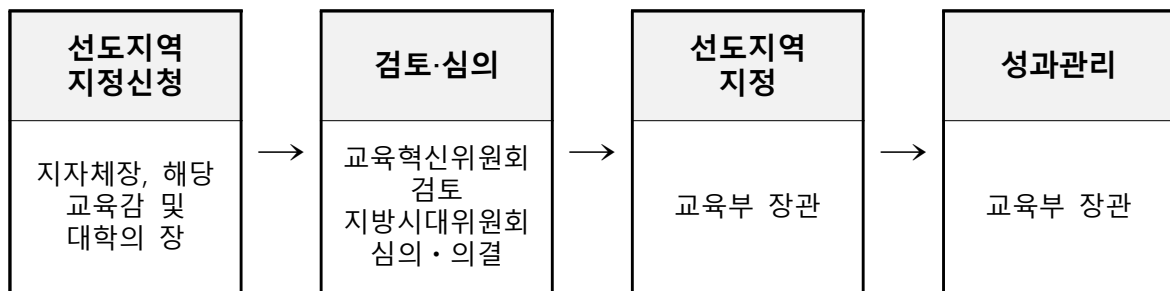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교육감 및 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선도지역 지정의 효과 등) ①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공동으로 선도지역 사업운영계획(이하 “선도지역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이 공동으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도지역 계획의 작성 방법 및 규제특례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선도지역의 변경) ①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정이나 제17조제1항의 선도지역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도지역 지정 및 선도지역 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지정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선도지역 지정의 효과 등) ① 제35조에 따라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공동으로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사업운영계획(이하 “선도지역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제39조에 따른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특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선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선도지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선도지역의 변경) ① 선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이나 제34조제2항의 선도지역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도지역 계획 및 선도지역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나 주민의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하지 아니하는 선도지역 지정 및 선도지역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선도지역의 유효기간 및 지정 해제) ① 선도지역의 유효기간은 선도지역의 지정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 ②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도지역의 지정해제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교육수요자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때 2. 대학이 지역 교육의 중심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때 3. 대학의 지원을 통해 공교육 혁신 추진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선도지역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선도지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에 따른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해제의 구체적 요건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선도지역 계획 및 선도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4조 및 제35조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8조(선도지역의 해제) ① 선도지역의 유효기간은 선도지역 지정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 ② 선도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도지역의 지정해제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교육수요자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때 2. 대학이 지역 교육의 중심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때 3. 대학의 지원을 통해 공교육 혁신 추진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선도지역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선도지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혁신선도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해제의 구체적 요건과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선도지구 운영의 성과관리) ①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공동으로 선도지역 운영 실적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도지역 운영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대학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방법 및 시기,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선도지역 운영의 성과관리) ① 선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선도지역 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39조에 따른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도지역 운영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선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방법과 그 밖에 교육혁신위원회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들은(김민전의원안 제15조부터 제19조 및 제22조, 김도읍의원안 제34조부터 제38조, 제41조 및 제4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수도권의 기초자치단체장), 해당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공동으로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이하 ‘선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교육혁신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일정사유 발생 시 선도지역의 지정해제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공동으로 선도지역 운영 실적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도지역 운영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지정 절차>



제정안들은 선도지역의 지정신청·지정·변경·해제·성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등을 규정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들의 선도지역은 앞서 살펴본 교육발전특구와는 대상 지역, 신청권자, 지정절차 및 운영에서 차이가 있지만 규제특례는 동일하게 적용됨.

<제정안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비교>

구분	교육발전특구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대상지역	수도권 제외	수도권
신청권자	지자체장(광역, 기초) 및 교육감	지자체장(기초), 교육감 및 대학의 장
지정절차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검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교육부장관 지정	교육혁신위원회 검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교육부장관 지정
운영	지역 정주여건 강화와 지역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운영	대학과 초중고 간의 연계를 통한 지역교육혁신을 목적으로 운영
특례 적용	신청한 지역에 한해 특례적용	신청한 지역에 한해 특례적용

우선, 선도지역 지정의 대상 지역은 수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발전특구의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제외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안의 교육 관련 특례는 전국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임. 제정안의 입법 취지가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정주기반을 강화하며, 지역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데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선도지역 대상 지역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다음으로, 선도지역의 지정 신청권자는 교육발전특구의 달리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면서 대학의 장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선도지역의 지정 신청권자를 단일 기초지자체인 개별 시·군·구만으로 한정할 경우 각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넘는 공동사업은 이를 각각 추진함에 따른 예산과 인력의 낭비가 우려되고, 지자체간에 불필요한 경쟁을 촉발하여 사업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권자에 개별 기초지방자치단체 외 공동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로 포함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다음으로, 제정안들은 선도지역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해제 사유 발생 시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의 ‘신청’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도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 실효성 측면에서 교육부장관의 직권 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제정안의 교육발전특구와 특례 적용이 동일한 점에서 교육발전특구 해제 사유 중 하나인 ‘법령을 위반하거나 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그 외 앞서 살펴본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신청 절차와 같이 사전에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 규정 필요성, 성과평가의 의무 규정 필요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나. 교육혁신위원회·전담조직·선도지역별 전담조직 등 설치·운영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제20조(교육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선도지역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선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제39조(교육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혁신위원회를 둔다. 1. 선도지역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선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3. 선도지역 협약 및 선도지역 계획에 관한 사항 4. 선도지역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5. 선도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의 부여·변경·취소·재심의에 관한 사항 6. 선도지역의 운영 실적과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선도지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혁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및 그 밖에 선도지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선도지역 협약 및 선도지역 계획에 관한 사항 4. 선도지역 운영을 위한 규제 특례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36조제1항에 따라 선도지역에서 신청한 특례의 부여·변경·취소·재심의에 관한 사항 6. 선도지역 지정 평가 및 성과관리,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선도지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혁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가운데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그 밖에 선도지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선도지역 운영 전담조직) ①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선도지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선도지역 운영을 전담	제40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교육부장관은 선도지역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선도지역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도지역 전담조직에 관한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하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선도지역별 전담조직) ① 선도지역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선도지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선도지역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정안들은(김민전의원안 제20조 및 제21조, 김도읍의원안 제39조, 제40조 및 제42조) 선도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혁신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선도지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담조직, 선도지역별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들에 따르면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육특구 검토·심의기구로서 선도지역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선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선도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의 부여·변경·취소·재심의에 관한 사항, 선도지역의 운영 실적과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선도지역 관련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검토·심의를 거쳐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실현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제정안들의 선도지역과 교육발전특구는 동일한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도지역과 교육발전특구 간

유사성을 고려하여 선도지역의 규제특례의 부여 여부를 검토·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 보다 교육발전특구위원회와 병합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더 적절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또한, 제정안들은 앞서 살펴본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위원회 위원 구성과 같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그밖에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상당히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제정안들은 선도지역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한편 선도지역별로도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선도지역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취지로 그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앞서 살펴본 특구 지역 전담기관의 설치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선도지역 전담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으로 판단되는바, 「정부조직법」 제2조는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에 대통령령(부처별 직제)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4) 규제특례(안 제23조부터 제37조)

가. 유치원·돌봄 관련 특례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제23조(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특구(선도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설립기준을 교육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 반의 편성·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특구 내 협약기관이 「유아교육법」 제8조의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유치원·어린이집 비용지원에 관한 특례) ①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총액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에도 불구하고 특구 계획에 따라 교육·보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제16조(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 설립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설립기준을 특구 지정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 및 반의 편성·운영,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구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특구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 협약기관이 「유아교육법」 제8조의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조금을 특구 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 배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관한 특례)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6조(거점형 늘봄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감은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초등학교들의 정규 수업 외 교육활동(이하 “늘봄학교”라 한다)을 관할 학교 시설 및 학교 밖 시설 등을 이용하여 거점 형태(이하 “거점형 늘봄학교”라 한다)로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거점형 늘봄학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점형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시설로서 학교 밖의 시설(이하 “거점형 늘봄센터”라 한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본다.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④ 교육감은 거점형 늘봄학교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의 업무와 권한, 책임 중 거점형 늘봄학교에 관한 사항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속 교직원에 대한 학교장의 지도·감독 권한 2.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9에 따른 학교장의 학교 시설·설비·교구의 관리·점검·보수·교체 등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장의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의 업무 및 책임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등에 대한 학교장의 업무 및 책임 4.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학교장의 민원처리 업무 및 책임 5.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에 따른 학교장의 취업자등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 등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제56조제5항에 따른 학교장의 취업자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의 확인 등의 권한과 책임 ⑤ 교육감은 거점형 늘봄학교 등 학교 밖에서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거점형 늘봄학교 운영 중에는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거점형 늘봄센터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 이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직접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도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학교 안전공제 적용에 관한 특례) 특구 지정 지역 내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 외에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늘봄활동 중 발생한 사고도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① 제정안들은(김민전의원안 제23조, 김도읍의원안 제16조) 특구 및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8조¹⁶⁾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설립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교육법」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¹⁷⁾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 반의 편성·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② 제정안은(김민전의원안 제24조) 특구 및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교육감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¹⁸⁾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하여 교육·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총액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¹⁹⁾에도 불구하고 특구 계획에 따라 교육·보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²⁰⁾에도

16)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7) 「유아교육법」

제12조(학년도 등) ③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 및 반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교육과정 등)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18)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9)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2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구하고 보조금을 특구 계획에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 배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③ 제정안은(김민전의원안 제25조) 특구 및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21)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④ 제정안들은(김민전의원안 제26조, 김도읍의원안 제17조) 특구에서 초등학교들의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늘봄학교)을 관할 학교 시설 및 학교 밖 시설 등을 이용하여 거점 형태(거점형 늘봄학교)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거점형 늘봄학교 이용 학생의 안전 보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들은 현행법 상 유치원 설립기준 및 교육과정, 비용의 보조, 보육시설(다함께돌봄센터, 늘봄학교)의 설치·운영 등의 규제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인구 지역 정착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역 맞춤형 지원제도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정안(김민전의원안 제23조) 유치원 설립기준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교육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학교설립 기준은 학생의 학습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²²⁾.

또한, 제정안은(김민전의원안 제24조) 영유아 보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현행법령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하여 교육·보육 비용 총액 지원,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급, 영유아보육 관련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 배분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수행 주체, 비용 지급 주체, 재원 마련 대책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8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①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군립학교·구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비·시설 등 설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교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본다.

나. 초·중등학교 설립·운영 및 교육과정 관련 특례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제27조(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 설립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설립기준을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교육과정, 수업, 학년제, 교과용도서 및 수업연한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교육과정의 특례) 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장은 다문화학생 등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 교육과정에 따라 다문화 학생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세계화된 지역	제18조(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 설립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설립기준을 특구 지정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교육과정, 수업, 학년제, 교과용도서, 수업연한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특구 지정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교육과정의 특례) 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장은 다문화 학생 등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 교육과정에 따라 다문화 학생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의 지침에 따른다. ② 특구 관할 교육감은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국제공인교육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특구 관할 교육감은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농어촌 학교 및 소규모 학교에 관한 특례) 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학교 전·입학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②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6조, 제30조 및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하거나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다른 학교 종류의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특구 관할 교육감은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농어촌 학교 및 소규모 학교에 관한 특례) 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학교 전·입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입학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②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6조, 제30조 및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특구의 관할 시·도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하거나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다른 학교 종류의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제정안들은(김민전의원안 제27조, 김도읍의원안 제18조) 특구 및 선도지역에서의 학교설립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²³⁾에도 불구하고 그 설립기준을 교육감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²⁴⁾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수업, 학년제, 교과용도서 및 수업연한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② 제정안들은(김민전의원안 제28조, 김도읍의원안 제19조) 특구 및 선도지역에서 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③ 제정안들은(김민전의원안 제29조, 김도읍의원안 제20조) 특구 및 선도지역에서 농어촌학교 전·입학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학교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23)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4)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24조(수업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晝間)·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제수업 등을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학년제) ①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수업연한) 초등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42조(수업연한) 중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46조(수업연한)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및 통신제(通信制) 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에 특수 학교 병설 또는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제정안들은 현행법 상 초·중·고등학교 설립기준 및 교육과정 등의 규제를 완화 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구 및 선도지역 학교에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국제공인교육과정 운영, 농어촌학교 전·입학 허용 및 특수학교 설치 등을 하려는 것으로,

지역 수요 및 상황에 따른 교육환경 제공 및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지역 수요에 맞는 특례적용으로 지역별로 학교설립 기준, 교육과정 운영 등이 달라질 경우 교육제도의 일관성 및 공정성이 저해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현행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등에서 학교설립, 교육과정 운영 및 전입학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²⁵⁾.

2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8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①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군립학교·구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비·시설 등 설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교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본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제외한다)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해당 혁신도시에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거나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하여 줄 것을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다. 교원 임용 및 자격 관련 특례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제30조(지역 교원에 관한 특례) ①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특구의 일부 지역 또는 일부 학교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u>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령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과 관계없이 특구의 일부 지역에서만 인정되는 교원 자격을 신설하고, 교원을 양성하며, 자격 검정 및 수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자격의 요건, 유효기간 등에</u>	제21조(지역교원에 관한 특례) ① 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특구로 지정된 지역 중 일부 지역 혹은 학교에서의 근무를 조건으로 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u>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의 표시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교과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만 인정되는 교원자격을 신설하고, 양성 및 검정·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자격의 요건,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③ 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에서 「초·중등교

경우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요청받은 시·도 교육감은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전·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중등학교에 전·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초·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특구 안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교육감(이하 “특구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23조 및 제29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도심융합특구에서 그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시·도지사등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전학·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도심융합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해당 도심융합특구 및 인근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중등학교에 전학·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원 간의 교차지도(다른 학교급의 학생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를 허용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과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통합 운영과 교차지도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교차지도에 참여하는 교원에게 필요한 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교원의 양성, 자격, 임용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육법」 제21조, 제30조 및 제61조에도 불구하고 특구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간의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원 간의 교차지도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교육과정 운영 및 교차지도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교차지도에 참여하는 교원에게 필요한 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교원의 양성 및 자격, 임용,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교원자격에 관한 특례) ①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장의 자격을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른 개방형 공모교장 자격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	제22조(교원자격에 관한 특례) 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교장의 자격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의 개방형 공모교장 자격기준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만 해당한다)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의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의 장(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 또는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④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지역교육혁신과 안정화를 위하여 특구 내 학교에 교원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교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제32조(협업교육에 관한 특례) ①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특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과 교사와 협약기관 전문가의 공동수업이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불구하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만 해당한다)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 또는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제27조(특구 내 학교에 대한 교원 추가배정에 관한 특례) 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지역교육혁신과 안정화를 위하여, 특구 내 학교에 교원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정원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제23조(협업교육에 관한 특례) ① 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특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과 교사와 협약기관 전문가의 공동수업이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제21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협약 기관 전문가의 수업을 허용할 수 있다. ②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기관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 지는 학교 밖 교육활동을 통한 수업을 인정할 수 있다. 제33조(산학겸임교사에 관한 특례) ①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산학겸임교사의 종류, 자격 기준 및 대체비율을 교육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 중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구에 소재한 기업의 임직원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특구 내 초·중등학교의 교과를 담당할 수 있다. ③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산학 협력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겸임	제21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협약 기관 전문가의 수업을 허용할 수 있다. ②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 밖 교육활동을 통한 수업을 인정할 수 있다. 제24조(산학겸임교사에 관한 특례) ① 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지역사회 및 산업체 전문가 활용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겸임교사 대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산학겸임교사의 종류 및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구 지정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③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초·중등 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구에 소재한 기업의 임직 원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교육부장관이 정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교사에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특성화고등학교 교원 파견에 관한 특례) ①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하 이 조에서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의 전문 교원 확보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 및 사립학교의 교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으로부터 전공 교과에 대한 전문성과 교사로서의 자질을 평가받은 자 2.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대학의 교원	하는 특구 내 초·중등학교의 교과를 담당할 수 있다. ④ 특구의 시·도 교육감은 산학협력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겸임교사의 교원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직업계고 교원 파견에 관한 특례) 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직업계고의 전문 교원 확보를 위하여 공·사립학교의 교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6조(전문교원 확보에 관한 특례) 특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직업계고의 전문 교원 확보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업계고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전공 교과에 대한 전문성과 교사로서의 자질을 평가받은 자 2.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대학교원

① 제정안들은(김민전의원안 제30조, 김도읍의원안 제21조) 특구 및 선도지역의 일부 지역 또는 일부 학교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교원을 임용할 수 있고,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교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령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과 관계없이 특구의 일부 지역에서만 인정되는 교원자격신설·교원양성·자격검정 및 수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특구 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원 간의 교차지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② 제정안들은(김민전의원안 제31조, 김도읍의원안 제22조 및 제27조) 특구 및 선도지역의 학교의 장의 자격을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²⁶⁾에 따른 공모교장 자격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구 학교의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특구 학교의 장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 또는 강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특구 내 학교에 「초·중등교육법」 제19조²⁷⁾에도 불구하고 교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함.

③ 제정안들은(김민전의원안 제32조, 김도읍의원안 제23조) 특구 및 선도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제29조²⁸⁾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관 전문가의 수업을 허용할 수

2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 또는 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교장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27)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8)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있도록 함.

④ 제정안들은(김민전의원안 제33조, 김도읍의원안 제24조) 특구 및 선도지역 학교의 산학겸임교사의 종류, 자격 기준 및 대체비율을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2항²⁹⁾에도 불구하고 교육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구 소재 기업의 임직원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임직원은 특구 내 초·중등학교의 교과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산학겸임교사에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⑤ 제정안들은(김민전의원안 제34조, 김도읍의원안 제25조 및 제26조) 특구 및 선도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 교원 확보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 및 사립학교의 교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등학교 교원 자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제정안들은 현행법 상 교원의 자격 및 임용기준, 교원의 정원 및 배치 기준, 학교의 장 자격 및 임용기준 등을 특구 및 선도지역의 학교에 완화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 산업체 임직원의 교사 임용 및 특성화고등학교 교원 자격요건의 완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비선호 지역의 우수 교원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여 지역에서 오래

29)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교육활동의 실현을 위해 교사수급정책의 유연화를 실현하며, 지역산업 연계를 통한 지역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지역 교원 자격의 신설·양성·자격검정 및 수여, 교원 자격 완화, 특구 교원 전보 제한 및 추가배치 등은 교원 자격증에 대한 법적 안정성·형평성, 교원 배치 원칙과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등에서 학교설립, 교육과정 운영 및 전입학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³⁰⁾.

3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8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제28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교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외국인 교원 임용) 혁신도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는 양호한 외국어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라. 외국인유학생 유치 특례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제35조(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구 내 고등학교 이하 각 급학교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사증의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및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특구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 또는 무상 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일반연수의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특구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경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유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항목과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구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특구 내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유치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제12조에 따른 의무(무상) 교육기관인 경우에도 일반연수의 사증 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특구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경우, 해당 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학교 설립자 또는 경영자가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비용의 항목과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제정안들은(김민전의원안 제35조, 김도읍의원안 제28조) 특구 및 선도 지역의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8조 및 제10조³¹⁾에도 불구하고 사증의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및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구 내 외국인 유학생에게 일반연수의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 유학생 교육 비용을 유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함.

제정안들은 현행법 상 외국인 출입국 절차 및 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한편 유학생 대상 수업료 등의 유상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역 인구소멸지역의 초·중·고등학교 유학생 유치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할 경우 외국인 유학생 부모의 동반 입국 및 국내 취업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재정 능력 부족한 유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사회적 비용 발생 문제 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31)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8조(사증) ① 제7조에 따른 사증은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單數査證)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複數査證)으로 구분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마. 지역 특성 산업인재 양성 특례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제36조(지역 산업 관련 교육을 위한 특례) ① 교육부장관은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대학”이라 한다)가 지역 산업 관련 캠퍼스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대학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교사 기준 면적 완화가 산업현장의 특수한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며, 그 필요성이 명확히 증명된 경우 2. 완화된 교사 면적이 교육의 질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대체 학습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한 경우 ②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산학 협력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사시설의 인정 범위 및 이동수업 가능 요건에 관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19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 내의 범위에서 대학의 교지 밖에 일부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9조(지역 산업 관련 교육을 위한 특례) 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가 지역 산업 관련 캠퍼스를 조성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교사 기준 면적 완화가 산업현장의 특수한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며, 그 필요성이 명확히 증명된 경우 2. 완화된 교사 면적이 교육의 질을 저해하지 않도록 대체 학습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한 경우 ②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가 산학 협력 교육이 가능한 교육을 활용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교사시설의 인정 범위 및 이동수업 가능 요건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장은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고등교육법」 제19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 내의 범위에서 대학의 교지 밖에 일부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정안들은(김민전의원안 제36조, 김도읍의원안 제29조) 특구 및 선도 지역의 대학교가 지역 산업 관련 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³²⁾에도 불구하고 교사 시설 인정 범위 및 이동수업 가능 요건에 관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고등교육법」 제19조 및 제25조³³⁾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학의 교지 밖에 일부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들은 현행법 상 대학의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의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역의 산업 관련 캠퍼스 조성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산업체 내에서 산학협력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다문화 및 외국어 교육을 통해 지역의 교육여건을 증대시키는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32) 「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5조(자산)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고등교육법」

제19조(학교의 조직) ①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연구시설 등) 학교에는 연구소 등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을 부설(附設)할 수 있다.

바. 국유재산·공유재산 등 사용·수익허가 특례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제37조(국유·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구 계획에 활용되는 토지는 특구 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신·증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구 계획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제30조(공유재산 양여에 관한 특례) ① 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구 계획에 활용되는 토지는 특구 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신·증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구 계획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제정안들은(김민전의원안 제37조, 김도읍의원안 제3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 학교의 신·증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함.

제정안은 특구 내 학교의 신·증설을 위하여 해당 지역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 가능하도록 하여 특구 내 교육 인프라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다만, 국유재산법령에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나 매각·대부 등은 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외교·국방상의 사유가 있거나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점³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바, 특구 내 학교의 신·증설 사업의 공익성, 타 입법례 등에 비추어 국유재산의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³⁵⁾.

34) 「국유재산법」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정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4의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미만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8.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9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화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특화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5) 규제 제외 우선 허용(안 제38조부터 제41조)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제38조(교육 분야 규제 제외 우선 허용) ① 특구나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선도지역의 경우 대학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장제1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교육 분야 규제 적용제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게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을 신청할 수 있다. 1.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구체적 규정이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른 기준·요건·절차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도 및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제 제외 우선 허용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나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해당 규제의 존재 여부와 규제	제31조(교육분야 규제제외 우선 허용) ① 특구와 선도지역에서 제3장제1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교육분야 규제 적용 제외 등을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적용받고자 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의 우선 허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규제제외 우선 허용을 신청할 수 있다. 1.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구체적 규정이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른 기준·요건·절차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도 및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규제제외 우선 허용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하 “관계기관”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자에게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익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제외 우선 허용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제41조에 따른 교육분야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의 존재 여부와 규제 적용 제외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두 차례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 제외 우선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이 허용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해당 규제의 존재 여부와 규제 적용 제외 특례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검토와 교육분야 규제제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의 존재 여부와 규제 적용 제외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일정기간 해당 규제의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를 우선 허용할 수 있다.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의 내용이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장과 협의하여 특례의 허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규제제외 우선 허용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규제 적용 제외 우선 허용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두 차례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 적용 제외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제 적용 제외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 제외 우선 허용 운영 결과를 첨부하여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교육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혁신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규제에 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⑨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 따른 요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제8항의 법령 정비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의 신청 및 세부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라 규제제외를 우선 허용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제5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이 허용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규제제외 우선 허용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제외 운영 결과를 첨부하여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교육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⑨ 교육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제외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규제제외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규제에 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⑩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8항에 따른 요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항의 법령 정비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 적용 제외 우선 허용의 유효기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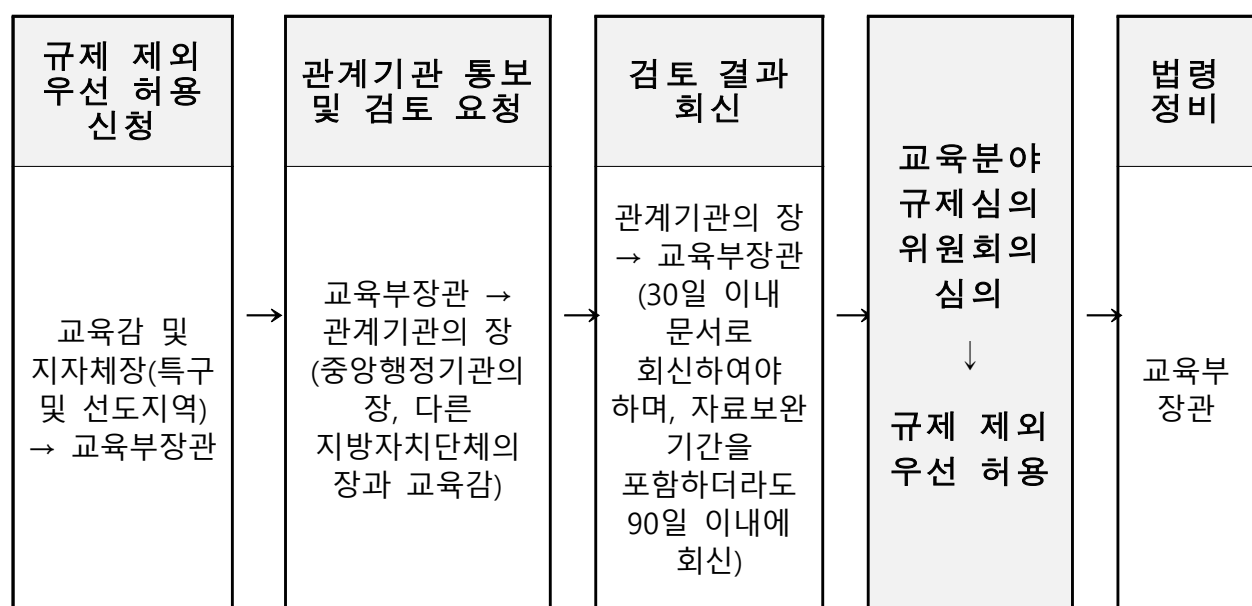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제39조(규제 제외 우선 허용에 대한 지원) 교육부장관은 제38조에 따라 교육 분야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을 받아 추진되는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규제 제외 우선 허용의 취소) ① 교육부장관은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제41조에 따른 교육분야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을 받은 경우 2. 제3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38조제10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규제 제외 우선 허용에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제외 우선 허용 신청 및 세부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규제제외 우선 허용에 대한 지원) 교육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서 교육 분야 규제제외 우선 허용을 받아 추진되는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규제제외 우선 허용 취소) ① 교육부장관은 규제제외의 우선 허용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규제제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제외 우선 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제외를 우선 허용받은 경우 2.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31조제11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규제제외 우선 허용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규제제외 우선 허용에 따른 제도 및 사업의 추진으로 공교육

김민전의원안	김도읍의원안
따른 제도 및 사업의 추진으로 공교육 발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의 일시적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이 취소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이와 관련된 제도 및 사업 추진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41조(교육분야규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분야규제심의위원회(이하 “규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교육 분야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의 부여·변경·취소·재심의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 분야 규제 제외 우선 허용에 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② 규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규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추진의 일시적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규제제외 우선 허용이 취소된 경우, 해당 특례에 따른 제도 및 사업 추진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정안들은(김민전의원안 제38조부터 제40조, 김도읍의원안 제31조부터 제33조)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구체적 규정이 없는 경우 등의 경우에 특구나 선도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게 규제 제외 우선허용을 신청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하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조회 및 교육분야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은이 규제 제외 유효기간 등의 일정한 조건을 정해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 제외 우선 허용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의 법령정비 요청, 교육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의 법령정비 의무 등을 규정하고, 규제 제외 우선 허용 미충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교육부장관 직권으로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교육 분야 규제 제외 우선 신청 절차>



제정안들은 지역의 교육 여건 및 수요에 맞는 특례 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필요한 지역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및 지역인재양성 시스템을 촉진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의 특례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교육부장관이 부여하는 것으로 법률에 규정된 타 부처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그 외 제정안에서는 교육분야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이 결정된 경우 해당 결과를 신청권자에게 통보하는 것에 대하여는 정함이 없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6) 보칙(안 제42조 및 제43조)

가. 실태조사

김민전의원안
제42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특구와 선도지역의 지정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김민전의원안 제42조) 교육부장관이 특구와 선도지역의 지정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교육발전특구 및 선도지역 지정 정책 수행 시 관련 사실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김민전의원안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특구위원회, 혁신위원회 및 규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정안은(김민전의원안 제43조)은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구위원회, 혁신위원회 및 규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형벌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교육발전특구 및 선도지역 지정 관련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 및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5

[참고자료 1] 제정법안 특례 주요 내용

분야	특례 내용	적용 이유 및 예시
유아 · 놀이	①협약기관의 유치원 설치 운영 허용	▶ 지자체와 산업체 등이 유치원을 설립
	②유치원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	▶ 지역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③유치원 어린이집 비용지원 특례	▶ 보육서비스 이용권 근거 마련
	④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특례	▶ 유치원·어린이집 내 돌봄센터 설치
	③거점형 놀봄센터 운영	▶ 여러 학교의 놀봄학교 수요에 공동 대응하는 ‘거점형 놀봄학교’를 운영 ▶ 학교 밖 시설에서 거점형 놀봄학교 운영 시 교육기관 법적 지위 부여
초 중등	①다문화·외국어, IB 교육과정 운영 및 통학구역 미지정	▶ 지역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②소규모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학년제 편성 자율화	▶ 저학년 혹은 고학년 초등학교 운영, 초·중 혹은 중·고 통합학교 설립
	③초중고 특수학교 병설 허용	▶ 지역의 선택에 따른 병설 특수학교 설립 가능
교원	①지역교원제 신설	▶ 교육감이 특정 지역에서만 임용이 가능한 지역교원을 임용 및 양성
	②교원자격에 대한 특례 적용	▶ 지역인재 양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자격증 없는 교장 임용 가능
	③협약기관 공동수업 가능 확대	▶ 교원자격 없는 지역 산업체 임직원의 공동수업 인정
	④산학겸임교사 자격 기준 완화 및 기업임직원 기간제 교원 임용	▶ 지역 상황에 맞는 산학겸임교사 및 기간제 교사 활성화
	⑤산학겸임교사 기본연구비 상향	
	⑥직업계고 대상 공사립 교사 파견 특례	▶ 직업계고 우수교원 활용
	⑦채원조달 가능한 경우 교원 추가 배정	▶ 특구 내 교원 추가배정 가능
유학생	①무상교육기관의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 지역소멸 지역 초중고의 유학생 유치 경쟁력 강화 ▶ 유학생 대상 재정 수익 가능
	②유학생 재정보역 기준 완화	
	③유학생의 경우 유상교육 적용	
대학	①지역산학 캠퍼스 조성 특례	▶ 지역산업체 내에서 산학협력 수업 활성화
	②산학 협력 교육 시 이동수업 요건 완화	
	③교지 밖 다문화 교육 대학 부속시설 설치	▶ 지역 실정에 맞는 다문화 교육 강화

[참고자료 2]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현황 : 7개 광역지자체 및 83개 기초지자체

유형	신청단위	1차지정	지자체명	2차지정	지자체명
1 유 형	기초 지자체	20건 (21개 기초지자체)	- (인천) 강화 - (경기) 고양, 양주, 동두천 - (강원) 춘천, 화천, 원주 - (충북) 충주, 제천, 옥천, 진천-음성, 괴산 - (충남) 서산 - (경북) 포항, 구미, 상주, 칠곡, 울진, 봉화 - (전남) 광양	21건 (21개 기초 지자체)	- (경기) 파주, 김포, 포천, 연천 - (강원) 강릉,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 (충북) 보은 - (충남) 공주, 금산 - (전남) 순천 - (경북) 김천, 영주, 영천, 울릉, 경산 - (경남) 남해
2 유 형	광역 지자체	6건 (6개 광역지자체 전지역)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1건 (1개 광역 지자체)	- 세종
3 유 형	광역지 자체가 지정하는 기초 지자체	5건 (5개 광역, 22개 기초지자체)	- 충남 (아산) - 경북 (안동-예천) - 경남 (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 - 전북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 전남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	3건 (3개 광역 지자체, 19개 기초지자체)	- 경남(의령, 창녕, 거창, 함양) - 전북(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 전남(여수,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해남)
계		31건		25건	